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06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조승래・민형배・이해민

김 윤・황정아・박용갑

이정문 · 강선우 · 한준호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 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2항·제3항 신설등).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를 "신청일부터"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의연장 사실과 사유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결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신청하
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상금) ① ~ ③ (생	제26조(보상금)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	4
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	- <u>신청일부터</u>
<u>청일부터</u>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u>다만, 특별한 사유</u>
야 한다. <u><단서 신설></u>	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으며,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
	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
	<u>지하여야 한다.</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생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추천을 받
	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
	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

천을 받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 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포상금 지급대 상자를 추천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생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